

---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2016.10.20.



중 소 기 업 청  
창 업 벤 처 국

# 목 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3
제3장 추진체계 .....	3
제4장 주관기관의 선정 .....	7
제5장 창업기업의 선정 .....	8
제6장 협약 .....	11
제7장 사업지원금의 지급 · 조성 및 관리 .....	12
제8장 보고[점검] 및 평가 .....	15
제9장 사업지원금 정산 및 관리 .....	19
제10장 사후관리 .....	21
제11장 행정사항 및 부칙 .....	22

[별지 제1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제2-①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기관맞춤형)

[별지 제2-②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연구원특화형)

[별지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별지 제3-①호]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별지 제3-②호] 창업기업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별지 제5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중소기업청 평가위원 청렴 · 윤리 실천 서약서

[별지 제7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권리 · 의무 이전 확인서

[별지 제8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멘토링 지원서

[별지 제9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제재 등급

[별지 제10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표준협약서

[별지 제11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표준협약서

[별지 제12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성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별지 제14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Business Model)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등을 위한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개시일) 및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원 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의 대표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로서 연구원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협의체(창업맞춤형사업화 TF, 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창업기업 선정, 협약, 점검, 사업지원금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창업기업 발굴, BM 진단, 창업기업 선정평가 및 추천,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배정 및 관리 등 창업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7.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함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평가위원회**”란 시장 및 기술전문가 중에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서류평가), 2차(관찰식 멘토링 평가), 3차 평가(발표평가)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사업운영위원회**”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지원서비스**”란 주관(협력)기관 및 전담기관이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개발,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검증 및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자금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1. “**시장전문가**”란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글로벌 컨설턴트,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판매·유통업자, 엔젤·벤처투자 심사역, 액셀러레이터 등을 말한다.

12. “멘토링”이란 시장 및 기술전문가 등이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수행과제 설정, 문제진단 및 해결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사업모델 진단 및 개발기법”이란 시장전문가 등이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진단 및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해외선진기법으로써 TEC, BMG, LEAN Startup, GTSC, QFCD 등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금”이란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한 마중물로써 멘토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해결을 위해 창업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에 지급되는 창업기업 서비스 비용 및 액셀러레이팅 비용을 말한다.
15.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의 사업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16. “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이나 창업기업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 또는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의 사업수행 및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지원금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8. “창업맞춤형사업화 TF”(이하 “TF”라 한다)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 방향 설정, 전략수립, 현안사항 자문 등에 필요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19. “멘토·자문위원단”이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한 멘토 Pool을 말하며 멘토 Pool의 구성, 멘토 자격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 “전담멘토”란 멘토·자문위원단 중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사업지원금 내용검토, 문제해결 멘토링 등을 전담하는 시장 전문가를 말한다.
21. “소통채널”이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과 시장전문가 등이 SNS, 온라인 전용사이트, 모임 등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 창구를 말한다.
22.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전담기관이 지원사업을 위해 주관기관 권역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23. “전담인력”이란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주관기관 소속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통해 자격검토·채용·변경이 결정되고, 프로젝트 기반 무기계약직 이상의 채용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24. “회계법인”이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 보고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5. “대응투자”란 주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지원금의 5% 이상을 주관기관 현금으로 투입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6. “직접투자”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대응자금과는 별도로 지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27. “투자연계”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직접투자 이외 투자유치 등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 28. “성과목표”란 주관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성과와 목표를 말하며, 전담기관과의 협약서 상에 표시된 목표를 말한다.
- 29. “제재”란 전담기관에서 사업수행 중 중단·포기·실패 등으로 판정된 창업기업 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총괄기관이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창업기업을 위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신청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의 규모 및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기간
5.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 제정으로 운영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 제 3 장 추진체계

**제5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지원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지도·감독
2. 사업 전담기관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협약, 평가, 사업지원금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6조(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총괄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2. 기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기관, 전담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관리

**제7조(창업맞춤형사업화 TF)** ① 총괄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전문가, 창업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자문
2. 지원사업 사업모델 혁신 및 분석에 필요한 Tool Kits 활용 자문
3.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4.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및 멘토·자문위원단 위원 추천
5.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2.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채권추심), 지원사업 점검
3. 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4.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 승인(확정, 정산 등)
5. 온라인시스템의 구축·운영
6.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7.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애로사항 소통채널 운영 및 해결
8.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이력관리 및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지원연계 추천 및 관리
10.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 교류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11.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주관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발굴, BM 진단, 창업기업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관리
2. 전담기관에 제출한 성과목표 관리 및 대응자금, 직접투자, 투자연계, 목표관리
3. 선정 창업기업의 2~3년차 멘토링 유지관리(대응자금 등)

4.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6.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정산 및 관리
7. 창업기업 점검 및 평가
8. 창업기업 최종평가 및 전담기관 승인(판정, 정산 등) 요청
9.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기업 창업성과 관리
10.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협력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제9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장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창업기업)** 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모델 진단 및 문제해결 멘토링 참여
2.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등 (후속지원)프로그램 참여
3. 멘토링 결과 지급되는 사업지원금의 적법한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
4.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점검, 평가에 대한 협조
5. 사업지원금 사용 결과보고서(증빙포함) 제출
6.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이력관리 및 성과조사에 대한 협조
7. 사업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관(협약종료 후 5년간)
8.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사업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2.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의 창업기업 선정 평가
3. 사업관리 등을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②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장기업 소속 전·현직 임직원
2. MD(Merchandiser), 파워셀러, 상장기업 마케팅 전문가 등
3.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AC)
4.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5. 글로벌 컨설팅사 소속 컨설턴트 및 실무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교수
6. 창업기업 업종별 기술분야 전문가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창업기업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 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평가위원 이력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문제가 발생한 창업기업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안에 따라 5인 내외의 사업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의 2/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 확정 및 사업지원금 조정

2.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선정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심의

3. 창업기업 “성공”, “실패” 최종 확정 및 사업지원금 정산액 최종 확정

4. 창업기업 “성공”, “실패” 확정 결과 및 사업지원금 정산결과 이의제기 최종 심의

5. 창업기업 지원 주요사항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기업 선정 및 사업지원금 확정

2. 창업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3. 문제가 발생한 창업기업의 지원서비스(멘토링 및 사업지원금 등) 중단 판정 및 제재 조치

4. 창업기업 “성공”, “실패” 1차 확정 및 사업지원금 정산액 1차 확정

5. 4호에 따른 확정 결과 이의제기 심의

6.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제12조 제3항을 따른다.
- ⑦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은 제12조 제4항을 따른다.
- ⑧ 위원회의 안전,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관의 점검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협력)기관 및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점검반은 전담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운영위원, 지방중기청(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점검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주관기관의 점검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점검반은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멘토·자문위원단)**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 전문가로 멘토·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멘토·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 4 장 주관기관의 선정

**제17조(주관기관 참여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 현황
2. 기관보유 창업지원 인프라 및 지원조직
3.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4.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5. 창업기업 멘토링 및 관리계획
6.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7. 기타 별지 서식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

③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지침에 따른 자격조건을 사전검토를 위해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주관기관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평가·현장점검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와 창업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기타 필요사항

③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통보 이후에도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 및 자격조건 미충족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확정된 사업지원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총괄기관의 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매년 주관기관의 선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5 장 창업기업의 선정

**제20조(창업기업 참여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K-Startup(www.k-startup.go.kr)'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괄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2.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④ 주관기관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은 사업아이템을 보강하여 다음 차수 모집 시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1회차 발표평가에서 탈락한 창업기업은 당해년도 지원사업에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총괄기관의 장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타 부처 사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공고 및 평가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등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에 대한 서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및 발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통된 평가 가이드를 주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서류 평가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관찰식 멘토링 평가 대상을 최종 선정 창업기업의 1.5배수 내외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별지 제3-2호]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관찰식 멘토링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 경영 분야 등을 포함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관찰식 멘토링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찰식 멘토링 평가위원은 서류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관찰식 멘토링 평가 시 전담기관에서 개발한 “창업자 자가역량진단 키트”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관찰식 멘토링 평가 운영에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지역협의회 단위로 평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관찰식 멘토링 평가 결과를 발표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4조(발표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표 평가 시 발표는 신청기업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주관기관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 평가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창업기업 명단을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별지 제3-2호] 제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창업기업 및 사업지원금을 주관 기관에 배정할 수 있다.

- 제25조(전담멘토 확정 및 문제진단 멘토링)**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확정 기업에 게 멘토·자문위원단 중에서 전담멘토를 지정하고 문제진단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멘토의 문제진단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 핵심과제를 정하고 창업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지원금을 배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담멘토를 교체하거나 복수(최대 2명)로 매칭할 수 있다.
-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멘토 지정 이외에 창업기업이 필요할 경우 멘토·자문위원단 등을 통해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전담멘토의 멘토링을 특별한 사유없이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원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문제진단 멘토링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링 횟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창업기업 사업지원금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문제진단 멘토링 의견(문제 해결 핵심과제, 사업지원금 검토안)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금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의 장 은 지원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배정한 사업지원금을 조정·확정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및 창업아이템명
  2. 사업지원금 규모 및 지원기간
  3. 기타 필요사항
- ③ 창업기업은 확정된 사업지원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장 협 약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과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이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창업기업이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이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
  - 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기업 지원내용 변경
  - 나. 주관기관 사업지원금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지원금 증감 항목이 10% 이상인 경우
  - 다. 주관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검토·채용·변경 등의 경우
  - 라. 협력기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마. 대응자금 규모 및 내용의 변경
  - 바.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할 사항
  - 가.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배정 결과
  - 나. 주관기관장의 변경
  - 다. 주관기관 참여인력(겸직)의 변경
  - 라. 주관기관 사업지원금의 비목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 사업지원금 증감 항목이 10% 미만인 경우
  - 마.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바. 기타 지침에서 전담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

② 사업지원금은 협약종료일 이전 1개월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창업기업은 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29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9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9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과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기간)**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기간은 지원 확정 통보일 이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기간의 축소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협약기간은 창업기업의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제 7 장 사업지원금의 지급 · 조성 및 관리

**제31조(총사업비)** ① 총사업비는 정부의 사업지원금과 창업기업의 사업기간 동안 기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② 창업기업은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공정기술 검증 및 인프라 확충, 자금조달 분야에 사업지원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원분야	사업지원금 사용
사업모델 진단·개발	사업모델을 진단·개발하기 위한 비용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이 원하는 제품(서비스)을 만들기 위한 비용
시장진입 및 글로벌 시장진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비용
공정기술 검증 및 인프라 확충	공정기술 검증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용
자 금 조 달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

\* 전담기관은 연구원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기술이전, 성능·기능 인증검사 비용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

③ 주관기관은 서비스 지원 및 액셀러레이팅(특화프로그램,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사업지원금을 활용하여야 하며, 매년 전담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의 5% 이상을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투입하여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대응자금의 30% 이상은 서비스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창업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수요가 적다고 주관기관이 판단할 경우,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이 2~3년차 창업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즉시 대응자금의 일정비율을 서비스 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사업비(정부 지원금) 중 인건비는 당초 주관기관에서 계획한 규모에서 변경할 수 없다.

⑤ 주관기관은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연계운영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협력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멘토링서비스 및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창업기업의 과업을 지원 하기위한 비용으로, 서비스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창업기업 당 서비스지원금은 총 1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전담인력 공통교육,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비용 내에서 지역협의회비를 최대 5백만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⑧ 지역협의회비 정산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지원분야		사업지원금 사용
서	비	창업기업 멘토링 서비스(BM개발, 아이템 개발, 시장연계)
액셀러레이팅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협력기관 연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역협의회비 등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 홍보비,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액셀러레이팅비의 10% 이내)

**제32조(사업지원금의 신청·지급)** ① 창업기업은 제26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사업지원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제진단 멘토링 시 결정한 사업지원금 내역을 협약기간 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멘토와 동의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지급 시 창업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금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⑥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은 사업지원금의 10%까지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기관 공동 지원경비, 인프라구축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여비, 정보활동비, 광고비,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편성비율 및 세부 사업비목은 총괄기관의 장이 정한다.

비목	내 용	집행주체
전담기관운영비	- 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인프라 구축비, 업무추진비 등	전담기관

**제33조(문제해결 멘토링)** ①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에게 전담멘토를 지정하고, 핵심 해결과제 도출과 문제해결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멘토의 자격은 제12조 제2항의 자격기준을 따른다.

② 문제해결 멘토링 비용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 강의 및 평가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단, 1일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사업지원금 관리)** ① 사업지원금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사업지원금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사업지원금을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회계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전에 완료될 경우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⑤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의해 결정된 사업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창업기업(대표자)의 부채 상환 및 이차지급, 공간임차료, 대표자 인건비에 사용하는 경우
3.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⑥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이 사업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대응자금을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미집행한 경우

## 제 8 장 보고(점검) 및 평가

### 제 1 절 창업기업

**제35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사업운영위원회의 '계속' 판정이 있기 전까지 창업기업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원금 집행 부진 등 창업사업화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자료 제출 불응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3. 사업지원금이 사업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된 경우
4. 사업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의 세부절차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최종보고 및 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창업기업에게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최종보고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최종보고 사항에 근거하여 창업기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최종보고서 및 현장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구분		창업기업
성공	최우수	- 매출증가율 10% 이상 - 고용증가율 10% 이상 - 자금유치 실적 보유(투자(VC,AC) 및 용자)
	우수	- 매출증가율 5% 이상 - 고용증가율 5% 이상
	보통	- 사업계획을 이행한 경우
실패		- 휴 · 폐업한 경우

- ③ 창업기업의 성공여부는 협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제2항의 평가기준 이외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 ⑤ 전담(주관)기관의 장은 성공판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3년차 멘토링 지원 또는 연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단 창업기업이 2~3년차 멘토링 등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 성공(졸업)할 수 있다.
- ⑥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창업기업별 수행과제의 “성공”, “실패” 의견을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창업기업 참석 하에 제재기준[별지 제9호]에 따른 제재등급 심의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결과를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 ⑧ 주관기관의 제재 조치를 안내받은 창업기업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제기신청서[별지 제 3-①호]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창업기업의 자진포기)** ①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포기사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포기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사업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재 등급([별지 제9호]) 및 집행내역의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심의결과검토 및 사업운영위원회(필요시)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 잔액반납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최종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제재 등급([별지 제9호])에 따른 제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 절 주관기관

**제39조(수시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운영 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창업프로그램의 이행이 부실한 경우

2. 지원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3. 사업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

4. 전담기관 장이 주관기관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수시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완(계속)', '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중단' 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결정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및 처리는 [별지 제3호]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제재여부 결정 내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사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연차별 성과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협약종료 후, 성과평가 항목의 내용을 포함한 연차별 성과보고서[별지 제13호]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내용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차년도 예산배분, 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별도의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연차별 성과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주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가 확인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연차별 성과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주관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하위 10%이내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의 항목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항목 및 배점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매출	창업기업 매출 상승률	10
	창업기업 매출총액	10
2. 고용	창업기업 고용 증가율	10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10
3. 자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과 (후원형 및 지분취득형 등)	10
4. 사업연계	창업기업의 타부처사업 연계성과 (R&D, 크라우드펀딩, 해외전시 등)	10
5. 지식재산권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성과	10
6. 특화프로그램	추진계획 대비 특화프로그램 운영성과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참가율 등)	30
가 점 (최대 10점)	수출성과 우수기업 수(건당 1점)	-
감 점 (최대 10점)	전담기관 제재(경고 회당 3점, 주의 회당 2점)	-
	전담인력 2명 근무 미준수	△10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미준수	△10
	대응자금 집행 부진	△5

## 제 9 장 사업지원금 정산 및 관리

**제43조(사업지원금 정산)** ①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 회계법인이 확인한 협약기간 중의 사업지원금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내에 사업지원금을 조기집행 완료한 경우 협약기간 중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점검반을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원금 집행잔액, 사용불인정 금액 등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창업기업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참석 하에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별지 제9호] 제재 등급을 전담기관에 재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이의제기 판정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지원금 정산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⑥ 창업기업은 사업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창업기업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창업기업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창업기업의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 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주관기관 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액 포함)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 단위는 절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정산잔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잔액은 반납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지원금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전담기관을 통한 주관기관 제재등급 및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된 제재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액환수, 잔액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의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기업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 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정부지원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총괄기관의 장이 창업기업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3.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
4. 중단, 포기 및 실패판정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가 결정된 창업기업의 정부지원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 지연이자

② 정부지원금 환수 기한은 환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부지원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반납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별도기준 마련을 통한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의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제 10 장 사후관리

**제48조(주관기관의 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보고 또는 온라인 입력을 이행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창업기업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함께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49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후 전담기관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창업기업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성과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40조에 근거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창업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② 창업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정부지원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총괄기관이 지원한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2조(후속(연계)지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후속(연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후속(연계)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선정, 지원 및 관리절차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11 장 행정사항

**제53조(권리 의무 이전)** ①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확인서(별지 제7호)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 사업지원금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지원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지원금 환수의 책임은 창업기업(선정자)에게 있다.

**제54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주관기관 및 전담인력 등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신용조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요건검토 등 필요시 주관기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등으로 하여금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지원금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지원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정보제공동의)** 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지원사업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동의서 제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유지의무)** 전담기관, 주관기관, 평가위원 및 멘토 등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8조(서류보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 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과 전담기관 장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총괄기관의 장의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운영지침(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16.7.27.)은 폐지하며, '1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부터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세부관리기준)** 이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이 마련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2000 . . .

주관기관명	
대표자	(직인)

## 사업 개요

<p>1. 주관(협력)기관 핵심역량과 역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관(협력)기관의 핵심역량</li> <li>2. 주관(협력)기관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시 역할</li> <li>3. 주관(협력)기관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산과 투자</li> <li>4. 주관(협력)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준과 여력</li> </ol>
<p>2.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업기업 발굴 및 선발 계획</li> <li>2. 지원대상 기업 선발 및 평가기준</li> </ol>
<p>3. 창업지원의지 및 지원사업 성과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관(협력)기관의 창업육성 보육의지</li> <li>2. 주관기관 선정 후 달성할 성과목표(1~2년, 전체)</li> <li>3. 시장전문가 및 액셀러레이터 확보 계획 및 전략</li> </ol>
<p>4. 특화유형 및 지원 특화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유형 ※ 예시 : 사업아이템 검증·보강형, 사업모델 보강 및 개선형, 파트너 및 투자 유치 연계형, 복합 연계 지원형 등</li> <li>2.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육성 특화프로그램 ※ 예시 :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등</li> <li>3.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 최근 3개년 실적과 기준 및 향후계획</li> <li>4. 시장연계 및 판매촉진</li> </ol>
<p>5. 주관(협력)기관 발전방안 및 정책건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발전방안 ※ 창업지원 생태계조성과 주관(협력)기관의 수익모델 등 제시</li> <li>2. 벤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건의 ※ 창업금융지원정책의 제도개선과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li> </ol>
<p>6. 주관기관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내역</p>	<p>※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금액), 지원기간, 주요성과</p>

## II

# 주관(협력)기관의 창업지원 역량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각종 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13.1.1. 이후)을 기준으로 작성
- 2)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구분하여 작성

## 2-1.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역할

주관기관 역할

협력기관 역할

## 2-2. 창업지원 실적

- 창업기업 발굴, 아이템보강, 교육, 고객개발, 사업모델개발 등

## 2-3.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실적

투자 및 연계실적

(단위 : 백만원, %)

투자 업체명 <sup>1)</sup>	투자 형태 <sup>2)</sup>	법인 설립일	투자일	회수일	투자 금액 (A)	회수 금액 (B)	Multiple (B/A)	회수 방법	투자 재원 <sup>3)</sup> 성격	비고
		yy-mm	yy-mm	yy-mm	200	0	0	미회수		직접
...										연계
합계										

1) 창업초기기업(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2)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3)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예. 성공벤처 회수자금, 모태펀드 00% 출자 등)

투자여력

- 주관기관 선정 후 지원대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력

## 2-4. 창업지원 인프라

- 창업기업 육성공간, 시설장비, 제작지원, 성능기능검사 등

## 2-5. 주관(협력)기관의 창업지원 핵심역량

- 내부인력의 창업관련 전문성 및 시장 경험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및 보장
- 창업지원대상 기업 문제 진단 및 멘토링
- 특수기술지원 및 성능기능 검사와 인증
- 투자심사역량

## 2-6. 시장전문가 보유현황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1) 주관기관 선정 후 실제 활용 가능한 인력

※ 제시한 시장전문가 pool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전담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창업기업 멘토링에 활용하여야함

2) 시장 전문가 예시

1. 상장기업 소속 전·현직 임·직원
2. MD(Merchandiser), 파워셀러, 상장기업 마케팅 전문가 등
3.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AC)
4.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5. 글로벌 컨설팅사 소속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시장전문가 pool 명단

NO	구분	성명	소속	주요업무	비고
1	대기업 임원	홍길동	OO기업	구매총괄	섭외예정/섭외완료
...					

### 시장전문가별 주요 경력

전문가1	분야	회사명	주요 경력현황	세부경력
홍길동	마케팅		OO기업 대표이사('02.3~'12.7)	OO기업 신사업 본부장('95.3~'01.10)

## 2-7. 주관(협력)기관 주요연혁

- 창업지원 관련 주요사항

## 2-8. 주관(협력)기관 재무 현황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 2-9. 운영인력 현황

운영인력 창업지원 경력 및 전문성

총괄책임자	기간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 <sup>1)</sup>	개인 주요실적 <sup>2)</sup>
홍길동					

1) 창업지원 경력 2) 투자, M&A, IPO 경력 등

전담인력 1	기간	기관명	직위	주요 경력현황 <sup>1)</sup>	개인 주요실적 <sup>2)</sup>
성명(직위)					

1) 창업지원 경력, 운영경력 등 2) 투자, M&A, IPO 경력 등

## 2-10. 주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창업기업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타 기관(기술지주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네트워크 현황을 작성
- 2) 창업기업을 지원할 핵심 파트너 및 관련 업종 상장기업 네트워크 현황을 작성

### III 주관(협력)기관 창업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특화프로그램은 1차년도를 중심으로 작성
- 2) 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 협력기관, 주관기관·협력기관 공동 프로그램 순서로 구분하여 작성
- 3) 주관(협력)기관의 창업기업 지원의지 및 강점 등을 포함하여 기술

#### 3-1. 주관(협력)기관 창업기업 선발 및 평가 기준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발굴기준

- 엔젤·벤처투자 선발기준, 평가기준 등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기준

- 창업기업 투자기준
- 벤처기업 투자기준

#### 3-2. 기업지원 특화유형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주관기관이 4-2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관리과제 및 솔루션 등을 감안하여 사업아이템 검증·보강형, 사업모델 보강 및 개선형, 파트너 및 투자유치 연계형, 복합 연계 지원형 등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 개요와 전략을 기술

### 3-3. 특화프로그램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1) 3-2에서 선택한 기업지원 특화유형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

####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NO	프로그램명	규모	대상	예산
1				
...				

### 3-4. 특화프로그램의 독창성과 효율성

### 3-5. 시장전문가 참여 동기부여 방안

시장전문가 유형 예시	참여 동기부여 방안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글로벌 컨설팅사 등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등	
판매·유통업자(MD, 파워셀러) 등	
엔젤(AC),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등	

### 3-6. 홍보 전략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창업기업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
- 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

## IV

#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 성과목표 및 실현가능성

### 4-1. 주관(협력)기관의 창업지원 의지

### 4-2. 성과목표 및 운영전략

#### □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주관기관 강점 및 전략에 따라 추가가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고
• 창업성공률(%)				수익모델 개발(BEP* 달성)
• 매출증가율(%)				업계 평균
• 고용증가율(%)				업계 평균
• 교육이수율(%)				전문 프로그램 참여
• 커뮤니티 참여(%)				사람관계

\* BEP(Break Even Point) : 손익분기점(창업기업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해연도 자본증자, 부채는 제외하고 매출을 통한 현금흐름이 +가 되는 경우)

#### □ 관리과제 및 솔루션

※ 관리과제 및 솔루션은 주관기관에 따라 추가가능

① 사업모델 개발 00개	소통채널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② 아이템 개발 00개		Start-Up 매출 Up 플랫폼 구축·운영
③ 신규 거래처 00개	협업	기관(기업)간·사업간 연계지원
④ 투자유치 00건	교육	전문(글로벌) 멘토링 서비스
⑤ 인맥쌓기 000명	멘토링	분야별 전문가 전담 (Pool 운영)
⑥ 문제해결 000건	네트워킹	참여기관, 기업, 전문가 네트워킹
⑦ 일자리 창출 00명	고용확대	업계평균 감안하여 설정
⑧ 매출액 00억원	매출증가	업계평균 감안하여 설정

#### □ 운영전략(실행전략)

#### 4.3. 직접투자와 투자연계 목표

직접투자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투자연계 목표건수 및 목표금액

#### 4.4. 대응투자(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 대응투자 금액을 조달하는 주체 등

#### 4.5. 창업기업 사후지원 계획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창업기업에게 제공하는 시장전문가 멘토링 매칭, 특화프로그램 등의 만족도 관리, 성과관리, 2~3년차 멘토링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V

# 컨소시엄 시너지 및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주관기관과 다수의 협력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시너지와 역할을 기술
- 2) 수행주체에 따른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하여 기술

## 5-1.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 5-2. 특화프로그램의 창업지원 실효성

## 5-3. 향후 특화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글로벌 제휴 계획

- 향후 추가로 개발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계획(2~3년차)
- 해외 VC 및 액셀러레이터와 제휴모델

## 5-4.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계획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창업기업 인맥쌓기, 문제해결, 투자연계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계획

## 5-5. 주관(협력)기관 발전 및 수익모델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발굴한 창업기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성공불제 도입, 지역사회 공헌 등 주관기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관 수익모델 등의 방안을 기재

## 5-6. 추가 연계 계획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연계 계획을 기재

##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 1) 사업비는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하여 작성
- 2) 대응투자 금액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전용자금으로써 “현금”만 인정
- 3)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전담인력 인건비는 주관기관 인력만 산정 가능

## □ 사업비 총괄표(1~3년차)

(단위 : 억원)

사업운영				창업기업 지원			
구분	정부 지원금	대응자금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지원금	대응 자금	대응 자금	대응 자금
2000년	10억원	0.5억원	10.5억원	10억원	0.2억원	0.2억원	0.1억원
2000년	10억원	0.5억원	10.5억원				
2000년	10억원	0.5억원	10.5억원				

\* 1차년도 대응자금(정부지원금의 5% 이상)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멘토링을 2,3년차까지 사용하도록 관리

\*\* 1차년도 사업에 대해 2,3년차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2000년, 2000년 신규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각각 대응자금(정부지원금의 5% 이상)을 계상

##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산출내역	정부지원금 (비율)	대응자금(비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금지원	30백만원 × 20개 과제 = 600백만원 (창업기업 자금 지원)				
서비스 제공	10백만원 × 20개 과제 = 200백만원 (시장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10백만원 × 20개 과제 = 200백만원 (특화 프로그램, 평가비, 인건비 등)				
합계					

○ 0년차 액셀러레이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산출내역	정부 지원금 (비율)	대응투자 (비율)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액 셀 러 레이 팅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등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 전담인력 인건비 기준: 3년 미만 28백만원 이상 3년 이상~7년 미만 35백만원 이상 7년 이상 40백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선정을 위한 평가비(관찰식 멘토링 평가비), 홍보비, 수당 및 소모품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액셀러레이팅비의 10% 이내)				
합 계						

【별첨 1】

# 협약서

주관기관: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2000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상에 표시된 각자의 역할에 동의하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사이에 다음 사항을 합의하여 이행할 것을 협약하고 협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협약 사항

1. 역할과 임무

주관기관 :

협력기관 :

2. 인적 물적 제공 및 대응 투자자금

주관기관 :

협력기관 :

3. 선정심사 시 전담기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선정 이후 체결하는 협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0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명  
대 표 자

(직인)  
(인)

협력기관 기관명  
대 표 자

(직인)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2】

## 확 약 서

본인은 2000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자료를 2000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본인은 선정심사 시 전담기관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선정 이후 체결하는 협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선정심사 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협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 지정 취소, 향후 사업제한 및 손해배상 등 처분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00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대 표 자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진흥원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협약 종료일 후에는 지원한 창업자에 대한 이력·성과조사를 위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200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①호】

## 2016년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기관맞춤형)

- ※ 본문은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불가(행추가는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분	야	<i>제조 / 지식서비스</i>	기업명		
사	업	<i>개인 / 법인</i>	개	업	<i>2000. 00. 00</i>
			연	월	일
			(회	사성립연월일)	
성	명		생	년	<i>1900.00.00</i>
			월	일	성
					별
					<i>남 / 여</i>
창업아이템명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최초 등록 사업자 기준)

### 1. 사업아이템 개요

사업아이템 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2. 창업기업의 준비성

### 2-1) 창업배경

○

-

※ 창업배경 :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2-2) 보유역량

○ 대표자 학력 ※ 대학(교) 이상 학력 기재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최종 학력 기재)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위
○○대학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2003.2. ~ 2008.2.	○○○학과	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석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박사

\* 석·박사 학위자는 졸업에 ✓ 체크

○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2015.2 ~			

○ 사업아이템관련 입상실적

입상일자	입상명	시행기관	상격
2015. 1. 1	○○○○ 창업경진대회 대상(1등)	○○진흥원	○○부장관상

- 직원 현황 \* 필요시 칸 추가 가능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 기타 보유역량

-

※ 기타 보유역량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 3. 사업아이템의 기술성

#### 3-1) 기술의 개요

- 

-

※ 기술의 개요 : 사업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 3-2)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 기술의 차별성 : 사업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 (업체)의 기술 및 이와 차별화된 점을 기재

### 3-3) 사업모델(BM)의 차별성

- 
- 

※ **BM의 차별성** : 제품(서비스) 판매방식, 반복구매와 지속성장 사업모델(BM)의 확보로 수익모델 차별화 정도, 홍보 및 판매전략의 구체성과 차별성 기재

## 4.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 4-1) 내수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내수시장 전략** :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4-2) 해외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국제협약체결 건수
○건	○○건	○○건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출분야 핵심인력 현황 : 00명

※ 관련인력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00무역회사 경력 3년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 2년 근무
			캐나다 00대학 마케팅 경영학사

\* 수출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출분야 핵심인력 예시

- 임직원 중 수출 또는 무역관련 회사 경력자
- 임직원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 경험자
- 임직원 중 해외학위(학사 이상) 보유자 등

○ 글로벌 홍보물 보유 현황 : 00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홍보물 이미지>	<홍보물 이미지>
< 홍보물 제목 (영어 외 0개 언어) >	< 홍보물 제목 (영어 외 0개 언어) >

\* 홍보물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글로벌 홍보물 기준 : 외국인 대상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등을 홍보물로 인정하고, 동일한 홍보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경우 1개로 인정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

4-3) 수익성

○

-

※ **수익성** : 사업아이템의 수익 창출방안,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시장(고객) 수요대비 공급(생산) 계획 등을 기재

5. 직원 총원 계획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현재 재직인원	명	추가 고용계획(1년이내)	명
---------	---	---------------	---

\* 고용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추가 인력 고용계획

No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16. 8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3	R&D	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고용계획을 기재

## 6. 자금 조달 계획

○

-

※ 자금 조달 계획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및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규모, 조달계획 등 기재 (정책자금 용자, 투자유치 등)

## 7. 향후 추진일정

(예시)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16.0.0. ~ 2016.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6.0.0. ~ 2016.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6.0.0. ~ 2016.0.0.	VC, AC 등

※ 향후 추진일정 : 시장조사, BM개발,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향후 추진 계획을 기재

## 8. 신산업분야 창업 (해당자만 작성)

※ 신산업분야 해당자가 아닐 경우 본 8번 항목 삭제 후 제출

※ 신산업분야 해당자의 경우 아래표의 해당사항에 ✓ 체크

업종 (지원분야)	신산업	<input type="checkbox"/> ICT융합 <input type="checkbox"/> 첨단신소재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신산업 <input type="checkbox"/> 고급소비재 <input type="checkbox"/> 바이오헬스케어 <input type="checkbox"/> 의료관광서비스
	미래성장동력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로봇 <input type="checkbox"/> 착용형 스마트기기 <input type="checkbox"/> 실감형콘텐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가상훈련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심해저 해양플랜트 <input type="checkbox"/> 5G이동통신 <input type="checkbox"/> 수직이착륙무인기 <input type="checkbox"/> 맞춤형웰니스케어 <input type="checkbox"/> 신재생 하이브리드 <input type="checkbox"/> 재난안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직류송배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초소형발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융복합소재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반도체 <input type="checkbox"/> 사물인터넷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대 상	목 록		비 고
필 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1차 서류평가 통과시 필수 제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선 택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1차 서류평가 통과시 해당자만 제출
	해외특허 등록서, 국제인증서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	핵심인력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글로벌 홍보물 관련 이미지 사본 등	
		국제협약서 등	
	고용실적 증빙서류	(동 사업 신청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기타 참고자료	본인의 아이টে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설계도 등		

\* 증빙서류는 1차 서류평가 통과 후 관찰식 멘토링 평가 당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증빙서류가 누락 제출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붙임 1>

**기타 참고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 2>

**수출실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수출실적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 3>

**고용실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고용실적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구성체계

구분	지원분야	핵심기술	비고
신산업창출	6개 분야	21개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79개	
계	25개 분야	100개	

I. 신산업창출 분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ICT융합	전기차	주행성능, 차체경량화, 충전서비스 등
	스마트카	스마트카관련 카메라, 센서, SW개발 등
	산업용무인기	항법장치, 고기능 기술개발 등
	지능형로봇	병원용로봇, 물류로봇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섬유, 소재, 부품개발, 인증 등
	스마트홈	표준화, 플랫폼, 연동 주변기기 등
첨단신소재	탄소섬유	보급형.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마그네슘	자동차, 항공기 등 관련 산업연계 소재 개발 등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 기술개발 등
에너지신산업	ESS (Energy Storage System)	송배전용, 소규모가정용 장치 등
	태양광	태양광관련 소재, 부품 등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서비스-솔루션 개발 등
고급소비재	화장품	고급소비재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 생산 · 제조와 동시에 판매, 수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바이오헬스케어	의약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위해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헬스케어	개인건강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등
	의료기기	수술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의료관광서비스	의료 예약.진찰.처방 등 원스톱 서비스	질병의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 코디네이터	환자-의료진 연계, 예약관리, 홍보 및 경영개선 등에 참여하며 공항교통.숙박.관광 서비스

## II. 미래성장동력 분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지능형 로봇	로봇지능 기술	로봇인식, 이동, 조작, 소셜, 지능 체계 등
	인지기능의 HRI기술	표정, 제스처, 대화 인식 기술 등
	로봇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로봇기술, 직관적 교시 기술, 그리퍼 기술 등
	로봇부품 기술	로봇센서 기술, 로봇구동기 기술, 로봇제어기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핵심부품 기술	시장수요 기반의 착용형 스마트 기기 사용자의 의도나 명령 입력 또는 출력 기술, 안전한 정보 처리기술,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배터리 전원 기술 등
	응용디바이스서비스	레저, ICT융합 상용화 기술을 접목, 안전,의료, 재난 방지 등 특수업무 활용, 개방형 스마트교육 및 학습활동지원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연결 기술 등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실세계 사람 배경 등을 컴퓨터 그래픽, 비전, 3D,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기술 등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실공간 혹은 가상공간의 환경구현을 위한 AR·MR·VR의 기술과 인간친화적 인터페이싱기술인 NUI·NUX 기술,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등
	인포콘텐츠 기술	사용자 성향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분석·검색,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에 다수가 참여하여 콘텐츠 활용 편의성 증대하는 소셜클라우드 협업 기술 등
	감성·뉴로 콘텐츠 기술	뇌파신호 판독하여 콘텐츠와 상호작용 하는 뉴로 콘텐츠 기술, 인간-기기-공간의 자연스러운 감성·인지웨어 기술, 오감인식, 감성UI·UX 기술 등
	빅콘텐츠 유통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안전한 소비 위한 환경, 저작권 보호기술, SNS 및 빅데이터 서비스의 결합한 콘텐츠 응용서비스 등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마이크로나노 생산시스템	자동생산시스템, 배양시스템, 분리정제시스템 등
	에너지기계	의약품 제조기기 등
	정밀가공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 공정기기 등
가상훈련시스템	가상체감 기술	현실감있는 가상환경 및 체감표현을 위한 SW, HW 생산 등
	원격협업기술	가상환경 저작 및 모사, 모션플랫폼 등 가상현실의 호환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시뮬레이터	군사용, 의료용, 산업용, 스포츠용 등의 시뮬레이터 제작 등
	기능훈련 서비스	의료, 플랜트, 레저 등 기능훈련 서비스 개발 등
스마트자동차	주변상황 인식 센싱 시스템	레이더기반 주행상황인지 모듈, 영상기반 주행상황 인지 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등
	클라우드기반 자율주행	클라우드맵 기반 주행상황 인지 및 플랫폼 기술,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수백Mbps급 V2X 통신 및 보안 시스템,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서비스,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등
	차세대 차량사물통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MI 차세대 IVN(In-Vehicle Network) 기반 제어기 기술 등
	스마트 액츄에이터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츄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 ADR(Autonomous-driving Data Recorder) 모듈 개발 등
	스마트 자율 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도로교통 상황정보 수집기술, 전자지도 플랫폼 기술, 자율협력도로 및 자동차 연계, 실증 기술 등
5G이동통신	5G 무선전송 용량 증대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통신, 차세대 Wi-Fi 기술 등
	이동 네트워크	고성능인프라, 차량간 직접통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플로우(Multi-flow) 기술 등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다비이스 수용	Short TTI, New Waveform, Fast 상향 링크, 대규모·다수연결 디바이스 기술 등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송 기술, 무선 백홀기술, 멀티RAT, 다층셀 클라우드 RAN기술, Ultra-Dense 소형셀 가상화 구조, Advanced SON 기술 등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등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등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시스템, 고농도 CO2 천연 가스 처리시스템, 천연가스에 다량 포함된 CO2를 처리하는 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처리 (Sweetening)시스템, 신개념 NGL(Natural Gas Liquid) 회수 시스템 MEG 회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 시스템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기술,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등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고속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 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주입 시스템, 심해용 URF(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등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패키지 (Basic DesignPackage),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기술,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기술 등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극지용 해양플랜트 빙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구조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빙저항·운동성능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방한성능 최적화 기술 등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엔진개발	기체, 엔진, 임무장비, 항공전자장비, 통지, 통제 지원 장비 제조기술 등
	완제기 개발	군단정찰용,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정찰용, TR-6X 틸트로터, 중고도, 사단정찰용, 차기 군단 등 무인기 개발 및 제조 등
맞춤형 웰니스 케어	빅데이터 공유 보안 기술	데이터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등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정보 연계 기술 등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시 정보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모델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데이터 연계기술, 정형·비정형 데이터 저장,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NRE-H 기술, 신재생에너지 하이 브리드시스템 통합제어 기술개발, 열전소자 등 타 기술분야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 계간축열 기반의 열에너지 활용 기술 등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압력차발전기(Tubor Expander Gene rator)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통한 고효율청정 가스 생산기술 등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건물의냉난방, 채광조절, 열및전기생산 등을 통합적 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기능, 고효율의 건물 외피 시스템 기술 등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 전기/수소 생산 및 변환 기술 등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신재생에너지원 가용 환경평가 및 최적에너지 Mix 구성 Engineering 기술 등
재난안전시스템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	스마트, 시뮬레이션, 시큐리티, 세이프티 빅보드 시스템 등
	국토관측센서 기반 감시평가 예측 기술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기반 가뭄·하천건천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 서비스 플랫폼기술 등
	재난상황 조망 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등
	도시지하매설물 모니터링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관리시스템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등
직류 송배전 시스템	핵심부품	스위치, 수동소자, 제어기 등 부품 제작 등
	모듈	DC차단기, VBE(Valve Base Equipment, 제어시스템), 전력제어 차단 및 계측·감시 기능 등
	시스템	DC차단기를 결합하여 다중 Point(1:N) 연계 가능한 매쉬형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
초소형 발전시스템	기반기술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효율화 기술, 소재 기술 등
	핵심기기	터빈 설계 제작 기술, 압축기 설계 제작 기술, 열교환기 설계 제작 기술 등
	발전시스템 설계·건설 운영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설계기술 등
	열원 연계와 확장 기술	원자력,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열원연계 등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반도체설계 SW Tool, SW-SoC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등
	스마트 인지·제어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지능형센서, 인지신호 처리제어 SW-SoC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기술 등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고속 이동통신 SW-SoC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W-SoC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W-SoC 기술, 고신뢰성 보장을 위한 SW-SoC 융합 기술 등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신경모사지능형컴퓨팅SW-SoC기술, 지능형 메모리 SW-SoC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W-SoC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등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반도체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반도체기술, 에너지고효율전력 관리SW-SoC 기술, 고효율 전력변환 SW-SoC 융합 기술 등
융복합소재	창의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피네도 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 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등
	탄소섬유복합재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고내열 투명소재 기술, 구조부품용 고강성 복합소재 기술, 친환경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능성 향상 중합, 전장부품용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개발, UTH용 소재부품개발, 고강성/고탄성 하이퍼 플라스틱 개발 등
사물인터넷	타이타늄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사물인터넷		제조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제조 및 고성능 합금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등
	디바이스 기술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등
	네트워크 기술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등
	플랫폼 기술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등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등
빅데이터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 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 관리 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등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줄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등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등
	빅데이터 원천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등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첨단소재의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가공·검사 장비, 개방형 CNC, 운영 S/W 등을 패키지 개발 등
	첨단공구	첨단소재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구형상 설계, 내마모성,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첨단소재 전용 공구개발 등
	하이퍼텍스	탄소섬유복합재 적층을 통하여 절삭가공 전단계의 CFRP 반제품 생산장비 및 성형장비개발 등

【별지 제2-②호】

## 2016년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연구원 특화형)

- ※ 본문은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 ※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불가(행추가는 가능)하며, 필요 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분 야	제조 / 지식서비스	기업명		
사업자 구분	개인 / 법인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남/여
연구원 특화 창업지원센터 입주희망	여 / 부			
창업아이템명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 (최초 등록 사업자 기준)

### 1. 사업아이템 개요

사업아이템 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2. 창업기업의 준비성

### 2-1) 창업배경

○

-

※ 창업배경 :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

### 2-2) 보유역량

○ 대표자 학력 ※ 대학(교) 이상 학력 기재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최종 학력 기재)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위
○○대학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2003.2. ~ 2008.2.	○○○학과	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석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input type="checkbox"/> 중퇴 <input type="checkbox"/> 재학·휴학			박사

\* 석·박사 학위자는 졸업에 ✓ 체크

○ 대표자 주요경력 ※ 연구원 특화형 신청자의 경우 연구원 관련 경력 기재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2015.2 ~			

○ 사업아이템관련 입상실적

입상일자	입상명	시행기관	상격
2015. 1. 1	○○○○ 창업경진대회 대상(1등)	○○진흥원	○○부장관상

- 직원 현황 \* 필요시 칸 추가 가능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 기타 보유역량

-

※ 기타 보유역량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 3. 사업아이템의 기술성

#### 3-1) 기술의 개요

○

-

※ 기술의 개요 : 사업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 3-2)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

※ 기술의 차별성 : 사업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 (업체)의 기술 및 이와 차별화된 점을 기재

### 3-3) 사업모델(BM)의 차별성

- 
- 

※ **BM의 차별성** : 제품(서비스) 판매방식, 반복구매와 지속성장 사업모델(BM)의 확보로 수익모델 차별화 정도, 홍보 및 판매전략의 구체성과 차별성 기재

## 4.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 4-1) 내수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 

※ **내수시장 전략** :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4-2) 해외시장 전략 (경쟁 및 판매가능성)

-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국제협약체결 건수
○건	○○건	○○건

\*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출분야 핵심인력 현황 : 00명

※ 관련인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성명	직급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00무역회사 경력 3년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 2년 근무
			캐나다 00대학 마케팅 경영학사

\* 수출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수출분야 핵심인력 예시

- 임직원 중 수출 또는 무역관련 회사 경력자
- 임직원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 경험자
- 임직원 중 해외학위(학사 이상) 보유자 등

○ 글로벌 홍보물 보유 현황 : 00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홍보물 이미지>	<홍보물 이미지>
< 홍보물 제목 (영어 외 0개 언어) >	< 홍보물 제목 (영어 외 0개 언어) >

\* 홍보물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글로벌 홍보물 기준 : 외국인 대상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등을 홍보물로 인정하고, 동일한 홍보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경우 1개로 인정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 **해외시장 진출 전략**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

4-3) 수익성

○

-

※ **수익성** : 사업아이템의 수익 창출방안,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시장(고객) 수요대비 공급(생산) 계획 등을 기재

5. 직원 총원 계획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현재 재직인원	명	추가 고용계획(1년이내)	명
---------	---	---------------	---

\* 고용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추가 인력 고용계획

No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i>S/W 개발</i>	<i>IT분야 전공 학사 이상</i>	<i>'16. 8</i>
2	<i>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i>	<i>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i>	
3	<i>R&amp;D</i>	<i>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i>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고용계획을 기재

## 6. 자금 조달 계획

○

-

※ 자금 조달 계획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및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규모, 조달계획 등 기재 (정책자금 용자, 투자유치 등)

## 7. 향후 추진일정

(예시)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16.0.0. ~ 2016.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6.0.0. ~ 2016.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6.0.0. ~ 2016.0.0.	VC, AC 등

※ 향후 추진일정 : 시장조사, BM개발,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향후 추진 계획을 기재

## 8. 신산업분야 창업 (해당자만 작성)

※ 신산업분야 해당자가 아닐 경우 본 8번 항목 삭제 후 제출

※ 신산업분야 해당자의 경우 아래표의 해당사항에 ✓ 체크

업종 (지원분야)	신산업	<input type="checkbox"/> ICT융합 <input type="checkbox"/> 첨단신소재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신산업 <input type="checkbox"/> 고급소비재 <input type="checkbox"/> 바이오헬스케어 <input type="checkbox"/> 의료관광서비스
	미래성장동력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로봇 <input type="checkbox"/> 착용형 스마트기기 <input type="checkbox"/> 실감형콘텐츠 <input type="checkbox"/>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가상훈련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심해저 해양플랜트 <input type="checkbox"/> 5G이동통신 <input type="checkbox"/> 수직이착륙무인기 <input type="checkbox"/> 맞춤형웰니스케어 <input type="checkbox"/> 신재생 하이브리드 <input type="checkbox"/> 재난안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직류송배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초소형발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융복합소재 <input type="checkbox"/> 지능형반도체 <input type="checkbox"/> 사물인터넷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대 상	목 록		비 고	
필 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1차 서류평가 통과시 필수 제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선 택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등		1차 서류평가 통과시 해당자만 제출	
	수출 실적 증빙서류 (최근 3년)	해외특허 등록서, 국제인증서 등		
		핵심인력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		
		글로벌 홍보물 관련 이미지 사본 등		
		국제협약서 등		
		고용실적 증빙서류		
	(동 사업 신청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기타 참고자료	본인의 아이টে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설계도 등			

- \* 증빙서류는 1차 서류평가 통과 후 관찰식 멘토링 평가 당일까지 연구원특화 창업지원 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증빙서류가 누락 제출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붙임 1>

**기타 참고자료 (해당자에 한함)**

사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 2>

**수출실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수출실적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붙임 3>

**고용실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고용실적 증빙서류  
이미지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구성체계

구분	지원분야	핵심기술
신산업창출	6개 분야	21개
미래성장동력	19개 분야	79개
계	25개 분야	100개

I. 신산업창출 분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ICT융합	전기차	주행성능, 차체경량화, 충전서비스 등
	스마트카	스마트카관련 카메라, 센서, SW개발 등
	산업용무인기	항법장치, 고기능 기술개발 등
	지능형로봇	병원용로봇, 물류로봇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섬유, 소재, 부품개발, 인증 등
	스마트홈	표준화, 플랫폼, 연동 주변기기 등
첨단신소재	탄소섬유	보급형.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등
	마그네슘	자동차, 항공기 등 관련 산업연계 소재 개발 등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 기술개발 등
에너지신산업	ESS (Energy Storage System)	송배전용, 소규모가정용 장치 등
	태양광	태양광관련 소재, 부품 등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품-서비스-솔루션 개발 등
고급소비재	화장품	고급소비재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 생산 · 제조와 동시에 판매, 수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식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바이오헬스케어	의약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위해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헬스케어	개인건강정보 통합.활용 시스템 등
	의료기기	수술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병원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의료관광서비스	의료 예약·진찰·처방 등 원스톱 서비스	질병의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 코디네이터	환자-의료진 연계, 예약관리, 홍보 및 경영개선 등에 참여하며 공항교통·숙박·관광 서비스

## II. 미래성장동력 분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지능형 로봇	로봇지능 기술	로봇인식, 이동, 조작, 소셜, 지능 체계 등
	인지기능의 HRI기술	표정, 제스처, 대화 인식 기술 등
	로봇시스템 설계 기술	안전로봇기술, 직관적 교시 기술, 그리퍼 기술 등
	로봇부품 기술	로봇센서 기술, 로봇구동기 기술, 로봇제어기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핵심부품 기술	시장수요 기반의 착용형 스마트 기기 사용자의 의도나 명령 입력 또는 출력 기술, 안전한 정보 처리기술,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배터리 전원 기술 등
	응용디바이스서비스	레저, ICT융합 상용화 기술을 접목, 안전의료, 재난 방지 등 특수업무 활용, 개방형 스마트교육 및 학습활동지원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연결 기술 등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실세계 사람 배경 등을 컴퓨터 그래픽, 비전, 3D, UHD, 홀로그램, 입체음향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기술 등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	실공간 혹은 가상공간의 환경구현을 위한 AR·MR·VR의 기술과 인간친화적 인터페이싱기술인 NUI·NUX 기술, 환경적응형 콘텐츠 기술 등
	인포콘텐츠 기술	사용자 성향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분석·검색, 콘텐츠의 구성과 표현에 다수가 참여하여 콘텐츠 활용 편의성 증대하는 소셜클라우드 협업 기술 등
	감성·뉴로 콘텐츠 기술	뇌파신호 판독하여 콘텐츠와 상호작용 하는 뉴로 콘텐츠 기술, 인간-기기-공간의 자연스러운 감성·인지웨어 기술, 오감인식, 감성UI·UX 기술 등
	빅콘텐츠 유통플랫폼 기술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안전한 소비위한 환경, 저작권 보호기술, SNS 및 빅데이터서비스의 결합한 콘텐츠 응용서비스 등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마이크로나노 생산시스템	자동생산시스템, 배양시스템, 분리정제시스템 등
	에너지기계	의약품 제조기기 등
	정밀가공시스템	융복합 분석기기, 공정기기 등
가상훈련시스템	가상체감 기술	현실감있는 가상환경 및 체감표현을 위한 SW, HW 생산 등
	원격협업기술	가상환경 저작 및 모사, 모션플랫폼 등 가상현실의 호환성 및 생태계 조성 등
	시뮬레이터	군사용, 의료용, 산업용, 스포츠용 등의 시뮬레이터 제작 등
	기능훈련 서비스	의료, 플랜트, 레저 등 기능훈련 서비스 개발 등
스마트자동차	주변상황 인식 센싱 시스템	레이더기반 주행상황인지 모듈, 영상기반 주행상황 인지 모듈, 확장성·범용성·보안성 기반 V2X 통신 모듈, 자율주행용 도로·지형속성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맵, 보급형 고정밀 복합 측위 모듈 등
	클라우드기반 자율주행	클라우드맵 기반 주행상황 인지 및 플랫폼 기술,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수백Mbps급 V2X 통신 및 보안 시스템, 스마트 드라이빙 클라우드 센터 기반 서비스, 커넥티드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등
	차세대 차량사물통신	운전자 수용성 기반 자율주행 HVI 차세대 IVN(In-Vehicle Network) 기반 제어기 기술 등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술	Fail Safety 기반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사고원인 규명 ADR(Autonomous-driving Data Recorder) 모듈 개발 등
	스마트 자율 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도로교통 상황정보 수집기술, 전자지도 플랫폼 기술, 자율협력도로 및 자동차 연계, 실증 기술 등
5G이동통신	5G 무선전송 용량 증대	Massive MIMO, Advanced Duplex, LTE-Unlicensed, mmWave 기반 광대역통신, 차세대 Wi-Fi 기술 등
	이동 네트워크	고성능인프라, 차량간 직접통신, 차량형 이동셀 기술, 멀티플로우(Multi-flow) 기술 등
	저지연·고신뢰 기술 및 다수 다바이스 수용	Short TTI, New Waveform, Fast 상향 링크, 대규모·다수연결 디바이스 기술 등
	5G 소형셀 기술	Ultra-Dense Network(UDN) 무선 송 기술, 무선 백홀기술, 멀티RAT, 다층셀 클라우드 RAN기술, Ultra-Dense 소형셀 가상화 구조, Advanced SON 기술 등
	모바일 홀로그램 및 초다시점 서비스 플랫폼	박막형 홀로그래픽 패널 기술, 모듈형 홀로그래픽 콘텐츠 변환 기술, 콘텐츠 획득 및 고속화 기술, 콘텐츠 저작 기술, 양방향 실감 인터랙션 기술 등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Oil & Gas 개발을 위한 해저·해상 통합 FEED 기술, 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해저·해상 통합 지능형 진단 및 감시시스템 등
	부유식 해상플랫폼 상부공정(Topside Process) 시스템	고효율 수분 제거 (Dehydration)시스템, 고농도 CO2 천연 가스 처리시스템, 천연가스에 다량 포함된 CO2를 처리하는 시스템, 친환경 산성가스처리 (Sweetening)시스템, 신개념 NGL((Natural Gas Liquid) 화수 시스템 MEG 화수 및 주입 시스템 해저해상 통합플랜트 전력공급/제어/감시 시스템 등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기술	해저 Foundation 및 StableLowering 기술, 고정밀 Dynamic Positioning 제어 및 해석 기술, 심해 URF 설치 설계/해석 기술 등
	심해저 생산 및 처리 시스템	고속대용량 심해저 원유분리 시스템, 심해저 다상 유동 펌프 시스템, 심해저 해수주입 시스템, 심해용 URF(Umbilical/Riser/Flowline), 심해저 대용량 Manifold & Template 등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패키지 (Basic DesignPackage),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기술,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위험도 관리 기술 등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극지용 해양플랜트 빙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구조성능 엔지니어링 기술, 빙저항·운동성능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방한성능 최적화 기술 등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엔진개발	기체, 엔진, 임무장비, 항공전자장비, 통지, 통제 지원 장비 제조기술 등
	완제기 개발	군단정찰용, 스마트무인기, 근접감시정찰용, TR-6X 틸트로터, 중고도, 사단정찰용, 차기 군단 등 무인기 개발 및 제조 등
맞춤형 웰니스 케어	빅데이터 공유 보안 기술	데이터접근 통제 기술, 익명화 기술 등
	개인건강기록 연동·통합, 저장 및 교환 표준체계	용어·코드 표준화, 건강정보 연계 기술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및 저장 기술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 기술, 데이터 전송시 정보 위·변조 방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모델 등
	개인 건강정보 기반 데이터 저장·분석·서비스	데이터 연계기술, 정형·비정형 데이터 저장, 대용량 데이터 저장·분석 기술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데이터 추론 기술, Alert/reminder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NRE-H 기반 고효율 융복합 분산형/독립형 발전 및 제어 기술	태양광-연료전지-ESS 하이브리드 발전/전력저장 기술, 바이오연료-NRE-H 기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통합제어 기술개발, 열전소자 등 타 기술분야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 계간축열 기반의 열에너지 활용 기술 등
	NRE-H 고효율 MCFC 융복합발전 및 청정가스 변환시스템	MCFC-압력차발전기(Tubor Expander Generator) 복합발전 기술, MCFC 복합발전을 통한 고효율청정 가스 생산기술 등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한 NRE-H 통합솔루션 시스템 기술	건물의냉난방, 채광조절, 열및전기생산 등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기능, 고효율의 건물 외피 시스템 기술 등
	NRE-H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스템	NRE-H 고효율 전기/수소 생산 및 변환 기술 등
	NRE-H 시스템 ICT융합 플랫폼 기술	신재생에너지원 가용 환경평가 및 최적에너지 Mix 구성 Engineering 기술 등
재난안전시스템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	스마트, 시뮬레이션, 시큐리티, 세이프티 빅보드 시스템 등
	국토관측센서 기반 감시평가 예측 기술	X-net 기반 수문정보 생성 및 예측기술, 위성기반 가뭄·하천건천화 평가 및 예측기술, 위성, radar, AWS 기반 홍수재해 평가 및 예측기술, 수자원 정보 서비스 플랫폼기술 등
	재난상황 조망 시스템	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지원 기술 등
	도시지하매설물 모니터링	IoT 기반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기술, 지하매설물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관리시스템	실시간 전역 위험 감시 기술, 도시철도 지하구조물 및 주변 지반 감시 기술, 지하수 및 지질 환경 실시간 예측 기술 등
직류 송배전 시스템	핵심부품	스위치, 수동소자, 제어기 등 부품 제작 등
	모듈	DC차단기, VBE(Valve Base Equipment, 제어시스템), 전력제어 차단 및 계측·감시 기능 등
	시스템	DC차단기를 결합하여 다중 Point(1:N) 연계 가능한 매쉬형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
초소형 발전시스템	기반기술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공정 효율화 기술, 소재 기술 등
	핵심기기	터빈 설계 제작 기술, 압축기 설계 제작 기술, 열교환기 설계 제작 기술 등
	발전시스템 설계·건설 운영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설계기술 등
	열원 연계와 확장 기술	원자력,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열원연계 등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반도체 설계기반기술	프로세서 Core 기술, 반도체 SoC IP, 반도체설계 SW Tool, SW-SoC 융합서비스 개발도구 기술 등
	스마트 인지·제어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지능형센서, 인지신호 처리·제어 SW-SoC 융합 기술, 고정밀 센서 신호처리 반도체, 웰니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기술 등
	스마트 통신의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고속 이동통신 SW-SoC 기술, 광대역 네트워크 SW-SoC 기술, 초저전력 Connectivity SW-SoC 기술, 고신뢰성 보장을 위한 SW-SoC 융합 기술 등
	초고속 컴퓨팅의 지능형반도체(SW-SoC) 기술	신경모사지능형컴퓨팅SW-SoC기술, 지능형 메모리 SW-SoC기술, 지능형반도체 경량·고신뢰 SW 기술, 빅데이터 고속처리 SW-SoC 기술, IoT향 저전력 프로세서 기술 등
	고효율 전력에너지용 지능형반도체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반도체기술, 에너지고효율전력관리SW-SoC 기술, 고효율 전력변환 SW-SoC 융합 기술 등
융복합소재	창의소재	현대판 연금술 기반 가스분리막 및 촉매소재, 휴리스틱스 최적화기술기반 LED용 형광체, 스피네도 결합에 의한 스위칭 용이 소재, 멀티레벨 컴퓨팅 구현을 위한 스마트소재, 자기동기화 바이오 소재, 오감증진용 자기조절 자기조립 소재 기술 등
	탄소섬유복합재	탄소섬유 저가화 기술, 탄소섬유 표면처리기술, 복합재료용 열가소성 수지기술, 금속 기반 복합재료, 탄소섬유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금속대체 소재기술, 고내열 소재 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고내열 투명소재 기술, 구조부품용 고강성 복합소재 기술, 친환경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능성 향상 중합, 전장부품용 하

지원분야	핵심기술	관련아이템
		이퍼 플라스틱 소재개발, UTH용 소재부품개발, 고강성/고탄성 하이퍼 플라스틱 개발 등
	타이타늄	저원가 고품질 Ti생산기술, 생활소재용 Ti산화물 제조 기술, Ti중간재 제조기술, Ti제조 및 고성능 합금기술, Ti부품 제조 공정기술 등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기술	초경량 저전력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자율제어/고신뢰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 개방형 HW/SW 플랫폼 기술, 초소형 저전력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등
	네트워크 기술	다중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자율 디바이스 연결을 위한 서비스 인지형 네트워크 기술, 이종기기간 연동을 위한 복합 IoT 게이트웨이 기술 등
	플랫폼 기술	분산구조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 실시간성 보장형 IoT 플랫폼 기술, 이종 플랫폼의 Federation 기술 등
	보안 기술	IoT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하드웨어기반 IoT 보안 기술, 코로스 레이어 보안기술 등
빅데이터	고성능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 관리 기술	고속 네트워크 통합형 분산처리 고성능화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처리 기술, 성능가속기 기반 고성능 저장 관리 기술, 다양한 응용 패턴 통합 지원 기술 등
	빅데이터 플랫폼 자원 관리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이종의 다양한 워크로드 인지형 자원관리 기술, 작업 처리율 향상을 위한 작업 스케줄링 기술, 최적의 성능 도출형 플랫폼 운영관리 기술 등
	예측형 시뮬레이션 및 지능 알고리즘 기반 분석 기술	지능형 예측 분석 기술, 이종 데이터소스 융합 분석 기술, 협업 분석 기술, 모사현실 모델링 프레임워크 기술 등
	빅데이터 원천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 구축 기술, 워크플로우 기반 적용 시나리오 구현기술, 데이터 품질 정량화 및 최적화 기술, 빅데이터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 등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첨단소재의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가공·검사 장비, 개방형 CNC, 운영 S/W 등을 패키지 개발 등
	첨단공구	첨단소재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구형상 설계, 내마모성,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첨단소재 전용 공구개발 등
	하이퍼텍스	탄소섬유복합재 적층을 통하여 절삭가공 전단계의 CFRP 반제품 생산장비 및 성형장비개발 등

## 이의신청(異議申請) 절차 및 처리방법

### 1. 이의신청의 구분

####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주관(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사업비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 나. 협약 이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 중단, 실패 판정 및 제재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주관(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 2. 이의신청의 절차

####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 가. 주관기관 선정평가결과, 주관기관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 나. 주관기관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

#### [창업기업의 이의신청]

-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창업기업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전담)기관에 이의신청
- 나.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신청 창업기업 명의로 주관(전담)기관에 신청

### 3. 이의신청의 처리

####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전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사업중단, 제재등급 등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관기관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 [창업기업 이의신청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주관(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실패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주관(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창업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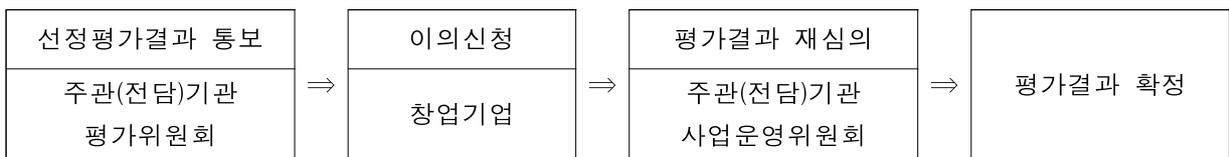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지침을 준용

##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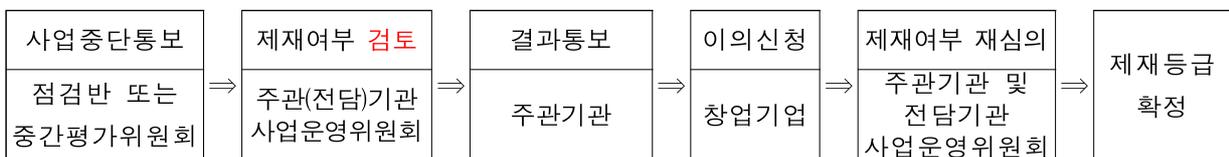
- 주관(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이후 이의신청기관 또는 이의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

### [창업기업 이의신청 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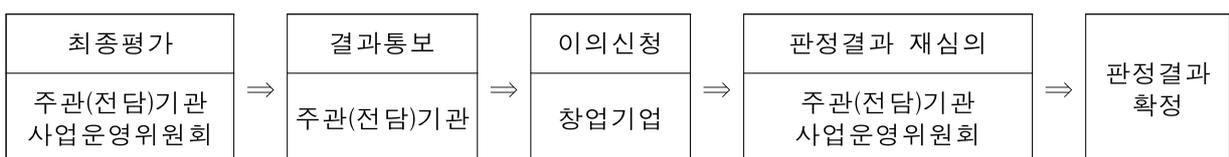
- 창업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중단과제의 이의신청



- 실패과제의 이의신청



【별지 제3-①호】

##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대 표 자	
			연 락 처	
	총괄책임자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성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input type="checkbox"/> 협약 후 전담기관의 사업중단, 제재등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p>본 기관은 2000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p> <p>[첨부] 1.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기관명 : 대표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창업진흥원장 귀하</p>				



**【별지 제4호】**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창업진흥원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기술창업카드 발급,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창업진흥원은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패밀리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창업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발급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업무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성명, 주민번호 등 기술창업카드 발급과 보증업무 지원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 우리은행, BC카드 및 기술보증기금 :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은 해당 업무 종료일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을 통한 신용조회 사실이 귀하(귀사)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2000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0 년    월    일  
기업명        〇〇〇 (인)  
대표자        〇〇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 중소기업청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_\_\_\_\_사업의  
\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과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하나,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하나, 나는 평가대상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수행을 통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관과 과제를 평가  
하고, 평가대상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000. . .

성 명 : (서명)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멘토링 지원서

<b>멘토</b>	성 명		<b>창업 기업</b>	성 명	
	소속기관			기 업 명	
	직 위			아이템명	

**※ 멘토링 진행방법**

- 보안서약서 서명
- 창업기업과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멘토링 목표 및 수행일정, 방법 등 협의
- 수행계획서 작성 및 주관기관에 제출(보안서약서 포함)
- 주관기관에 멘토링 수행계획서 승인 후 멘토링 진행
- 매 회차별 멘토링은 회당 최소 1시간 이상, 직접만남을 통해서 진행
- 매 회차별 멘토링 종료 후 7일 내 주관기관에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은 멘토링 결과보고서 접수 후 창업기업으로부터 멘토링 만족도 평가 실시
- 멘토링 수당 정산

**※ 첨부서류**

- 보안서약서 양식 1부. (별첨 1)
-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멘토링 수행계획서 양식 1부. (별첨 2)

2000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창업기업의 창업지도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2000 . . . . .

00주관기관의 장

【별첨 1】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00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등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주관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주관기관에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주관기관의 사업정보 및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핵심기술 및 정보, 중요 기술비밀을 사업 참여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해당 주관기관 외, 타 주관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멘토명 : (인)

2000 . . .

00주관기관 장 귀하









【별지 제9호】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제재 등급

□ 창업기업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창업기업 대표자가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협약취소
포기	□ 취업, 사업모델·아이템 개발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실패	□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잔액) 환수	-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년 / -	- / -	선정취소 / 선정취소
기타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년 / -	전액 환수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경고
	□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극히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	경고
	□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주의
	□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3년 / -	- / -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주관기관

제재등급	기 준	제제 및 환수기준
협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li> <li>○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li> <li>○ 당해 연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2회 경고를 받은 경우</li> <li>○ 기타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전액환수 (참여 제한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이 부득이하게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li> </ul>	잔액환수 (참여 제한 1년)
경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li> <li>○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li> <li>○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우</li> <li>○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상의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불이행한 경우</li> <li>○ 전담인력 요건(연봉, 경력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 수시·최종점검 시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li> <li>○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이상을 부적절(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li> <li>○ 기타 전담기관에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ul>	성과평가지 감점 (건당 -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자금을 고의적으로 미집행 경우</li> </ul>	성과평가지 감점(-5점)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 무관한 물품구매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li> <li>○ 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미만을 부적절(불인정)하게 집행한 경우</li> <li>○ 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li> <li>○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 전담인력이 지원사업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li> <li>○ 사업의 지원·관리 소홀 등 주의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li> </ul>	주의 2회시 경고 1회, 성과평가지 감점 (건당 - 2점)

\* 참여제한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

【별지 제10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표준협약서**

**주 관 기 관 표 준 협 약 서**

사 업 명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협 약 기 간 :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협 약 금 액

(단위 : 원)

정부 지원금	대응자금(현금)	계

협 약 당사자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장 :

(직인생략)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

(직인생략)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대표(이하 “창업자”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자의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을 성실히 지원·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창업자의 요청에 따라 창업자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창업자가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사업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는 창업사업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창업자는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의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수시·중간·최종 등 점검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의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자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자가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다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자와 타 주관기관에 매칭된 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자는 (주관기관)과 타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자는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중간·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시·중간·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자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간·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자는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창업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협약변경)

1. (주관기관)은 지침 제2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주관기관)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창업자는 사업 지침 제28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창업자가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담기관)과 창업자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또는 창업자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주관기관)은 창업자와의 협약기간 종료 후,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창업자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 창업자는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청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창업자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는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00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기 관 장 (직인)

주 소

주 관 기 관 명

기 관 장 (직인)

주 소

【별지 제11호】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표준협약서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 업 기 업 표 준 협 약 서

- 협 약 번 호 :
- 사 업 명 :
- 협 약 기 간 :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개월)
- 정부지원금

전담기관의 장 :

- 협약 당사자 주관기관의 장 :

창업기업 대표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대표)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자)의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대표)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의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 대표)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특화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성실히 지원·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 대표)(이하 “창업자”이라 한다)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창업자)의 요청에 따라 (창업자)에게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창업자)이 집행을 요청한 내용이 사업계획서, 사업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은 창업사업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창업자)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주관기관)과 (창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의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또는 (창업자)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의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자)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자)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사업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자)과 타 주관기관에 매칭된 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자)는 (주관기관)과 타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자)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중간·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중간·최종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사업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자)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간·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전담기관)과 (창업자)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자)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창업자)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 (협약변경)

1. (창업자)은 사업 지침 제2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 주관기관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창업자)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담기관)과 (창업자)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또는 (창업자)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주관기관)은 (창업자)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창업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 (창업자)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청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창업자)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 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자)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사업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창업자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

200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주 관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창 업 기 업 명 :

대표자 : (직인)



# I. 사업추진 현황

## 1.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1차년도 목표	1차년도 달성률	비고
• 창업성공률(%)			수익모델 개발(BEP* 달성)
• 매출증가율(%)			업계 평균
• 고용증가율(%)			업계 평균
• 교육이수율(%)			전문 프로그램 참여
• 커뮤니티 참여(%)			사람관계

운영전략(실행전략) 대비 실행 내용

## 2. 관리과제 및 솔루션

관리과제 및 솔루션

관리과제 및 솔루션 목표	목표	실적
① 사업모델 개발	00개	00개
② 아이템 개발	00개	00개
③ 신규 거래처	00개	00개
④ 투자유치	00건	00건
⑤ 인맥쌓기	000명	000명
⑥ 문제해결	000건	000건
⑦ 일자리 창출	00명	00명
⑧ 매출액	00억원	00억원

운영전략(실행전략) 대비 실행 내용



#### 4. 특화프로그램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 5. 멘토링 서비스

계획	실적

[부진 시 부진사유]



7. 사업추진실적 종합의견 및 향후 계획(자율기재)

Blank area for reporting business progress, overall opinion, and future plans.

<첨 부>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서

## II. 창업자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

### 1. 총괄 추진실적 요약

과제명 (창업기업명/창업자명)	구분	추진 실적	추진율 <sup>주1)</sup> (%)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계획		100%
	실적		
	· · ·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 I. 총괄현황

### 1. 조성금액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창업자 지원금	집행률(%)
		정부 지원금	대응자금		
조성액					

### 2.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창업자 지원금	집행률(%)
		정부 지원금	대응자금		
집행액					

### 3. 집행잔액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주관기관		창업자 지원금 (b)	집행률(%)
		정부 지원금(a)	대응자금		
잔 액					

### 4. 발생이자

(단위 : 원)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발생이자(c)	창업자 정부지원금 발생이자(d)

### 5. 반납금액

주관기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a)+(c)	창업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b)+(d)

(단위 : 원)

## 6. 비목별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창업자 정부지원금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자금조달				
	생산시설확충				
합 계					

## II. 세부현황

### 1. 기술창업자별 집행내역

#### 1) 과제명(창업자명)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창업자 지원금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자금조달							
	생산시설확충							
합 계								

## 2. 주관기관 정부지원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특화 프로그램					
소 계					
인건비					
소 계					
일반수용비					
소 계					
여비					
소 계					
업무추진비					
소 계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합 계					

【별지 제13호】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창업기업명		창업자명	
창업일		정부지원금	
창업과제명			
분야구분 <sup>1)</sup>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      (해당분야 )		
협약기간	2000. . . ~ 2000.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
연락처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목표 및 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목표 ○ ○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 ○		
사업추진 실적	<input type="checkbox"/>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등록    건) ① 출원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등록명 및 번호(등록일자) :  - 지식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input type="checkbox"/> 추진 실적 - 추진 실적을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실적 - 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input type="checkbox"/> 매출현황 <sup>주1)</sup>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고용현황 <sup>주1)</sup> 명	

주1) 매출 및 고용은 완료평가일 현재 기준

<p>향후추진계획</p>		
<p>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p> <p>(□에 √로 표기 하고 의견 작성)</p>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p><b>확 인</b></p>	<p>창업기업명 :</p>	<p>대표자명 : (인/서명)</p>

\* 창업기업 최종보고서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

【별지 제14호】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사업비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창업진흥원장 귀하